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7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서영석 · 소병훈 · 서미화

김선민 · 이수진 · 이해민

남인순 · 노종면 · 전진숙

최혁진 · 박지원 · 김 윤

의원(12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리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고, 조리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조리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

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거를 신설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훼손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8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 환자

제75조제1항제17호 중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다만, 제1호의2의 경우는 감염력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54조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의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수리의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7조제7항에 따른 절차 등을 준용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리사 결격사유에 대한 특례) 이 법률 시행 당시 개정 전 제54

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 있

는 조리사에 대해서도 제80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 설>

2. ~ 5. (생 략)

②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 업무정지(다만, 제1호의2의 경우는 감염력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54조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

1의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집단급식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의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수리의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7조제7항에 따른 절차 등을 준용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⑧ (현행 제7항과 같음)